

의안번호	제 57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1월 11일

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5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1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21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20년도말 조성액(A)	2021년도 운용계획			2021년도말 조성액(E=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1,032,689	304,332	239,686	64,646	1,097,335

- 2021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20년말 조성액(A)	2021년말 조성액(B)	증감 (C=B-A)
계 (14개)	1,032,689	1,097,335	64,646
청소년육성기금	1,493	1,496	3
양성평등기금	6,782	6,763	△19
통합관리기금	73,349	117,042	43,693
지역개발기금	780,705	801,779	21,074
자활기금	2,090	2,001	△89
사회복지기금	31,258	35,520	4,262
식품진흥기금	12,054	11,441	△613
남북교류협력기금	4,490	3,545	△945
체육진흥기금	2,771	2,810	39
중소기업육성기금	35,239	27,141	△8,098
투자진흥기금	20,235	20,502	267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68	6,378	10
재난관리기금	16,799	19,786	2,987
환경보전기금	39,056	41,131	2,075

3. 의안전문 : 첨부 (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**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

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